

조례제정안 검토내용

제3조(협의회의 구성)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

--- 이하생략 ---

<제1안>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

--- 이하생략 ---

<제2안>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,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

--- 이하생략 ---

<제3안>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,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관련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

--- 이하생략 ---